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6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건) 12,960,060원, 지방교육세(2건) 686,670원,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가.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B단지 내 토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C 공장용지 12,107㎡(이하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563.2㎡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이하 위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및 증축하였다(한편, C은 2014. 4. 29. C 및 D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취득세를 면제받고, 아래와 같이 각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 (2013. 11. 19. 소유권보존등기)	2013. 10. 7. 신축	2013. 11. 13. 증축	2014. 8. 1. 증축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563.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236.8㎡	-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84.58㎡
신고·납부한 세액	2013. 11. 13. 농어촌특별세 2,304,140	2013. 11. 13. 농어촌특별세 840,000원	2014. 8. 7. 농어촌특별세 117,600원

나.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제3자인 E에게 임대한 행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3.2㎡에 대한 취득세(2건) 12,960,060원, 지방교육세(2건) 686,670원,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제3자인 E에게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추징사유 즉,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임대한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각 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1], 위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같은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도로 추징처분을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642 사건의 판례를 들면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는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2)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3, 4, 8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11. 2. 21. B단지 내 토지인 C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공장 및 공장창고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11. 25. 산업기계, 정밀의료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각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그 취득일, 등기일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E에 임대한 행위는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위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것 역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라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 지방세특례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에 따른 추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다가 스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면신청이 필수적이지 아니한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세금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의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에 정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9

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